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530396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설재선, 정동민, 한태영, 장은진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최명

변론 종결2020. 9. 10.

판결 선고2020.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2019. 7. 22.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대상회사'라고 한다)의 의결권 있는 상환우선주 62,500,000주(50% 지분)를,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B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20. 8. 26. 이 사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는 대상회사의 보통주 62,500,000주(50% 지분)를 각 보유한 주주들이었다. 피고는 D와 원고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각각 인수하여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나. 1) 피고는 2019. 1. 16. D와, D가 보유하고 있던 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상환우선주 62,500,000주를 8,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피고-D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 주식매매대금 8,2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62,500,00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피고-D 주식매매계약 제3조 3.2의 (4)항(이하 '대상회사 임원사직 등 조항'이라 한다)은 거래 종결시 매도인(D)의 이행사항으로 '대상회사 등기임원의 사직서 및 대상회사 운영에 관한 자료 일체 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3) 당시 대상회사의 이사로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H,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이 있었는데, 그 중 H와 I은 2019. 1. 16. 사임하였고, 같은 날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K와 피고 측 L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대상회사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가, 이사회에서 위 K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각각 이루어졌다.

다. 1) 피고는 2019. 1. 16. 원고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대상회사의 보통주 62,500,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7,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2019. 2. 18. 위 3조의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주식 양도시기 등]

원고는 위 3조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제6조[원고의 진술 및 보증]

1.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C. 피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받은 후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2. 피고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B. 원고가 제6조에 기재한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인 경우

2)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중도금으로 4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금 6,500,000,000원에 관한 지급기일은 2019. 5. 2.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잔금 6,5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4. 16. 대상회사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금 6,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2020. 4.

16.자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4. 17. 대상회사에 도달하였다.
마. 현재까지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금 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제 주장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기존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M 등(이하 '원고의 구 경영진'이라 한다)은 2019. 5. 10. 피고에게, 현재 원고는 원고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구 경영진과 N조합(이하 '원고의 신 경영진'이라 한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르는데 있어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잔금 지급 사고가 생기는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피고가 이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2019. 5. 10.자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보냈다.

나) 원고는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807호로 K, L을 채무자로 하여, K, L을 대상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대상회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이하 '관련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4.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1498호로 대상회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16, 18,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M&A에 관한 특수목적법인인 대상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통한 O의 경영권 인수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해 대상회사 및 O의 경영권 이전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구 경영진과 원고의 신 경영진 사이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의 구 경영진으로부터 잔금 지급 사고 등을 경고하는 내용의 2019. 5. 10.자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등 원고의 신 경영진에게 적법한 대금수령권한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측 K, L을 대상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대상회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라고 다투면서 관련 가처분 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 C.에서 정한 원고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해 부담하는 대상회사 및 O의 경영권 이전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2020. 7.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매매대금 7,0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대상회사나 O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쌍방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피고는 대상회사의 경영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날 체결된 피고-D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대상회사의 지분 전부를 확보함으로써 대상회사의 경영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매도인인 원고가 대상회사의 경영권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다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각 주식을 이전받게 되면 피고는 대상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주주가 되므로, 현재 발생한 원고 내부의 경영권 분쟁 등의 사정이 피고가 장차 이 사건 각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데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한 내지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로서는 대상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함으로써 얼마든지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 완납 이전에 원고에 관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 C.에서 정한 원고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 측 K, L을 대상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대상회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라고 다투면서 관련 가처분 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 또한 그 자체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 C.에서 정한 원고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해 부담하는 대상회사 및 O의 경영권 이전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대상회사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피고 측 K, L이 대상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은 피고-D 주식매매계약의 대상회사 임원사직 등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만 하면 양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의 구 경영진과 원고의 신 경영진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나 원고의 신 경영진이 대금수령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피고의 양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동시이행항변

1) 피고는 자신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양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양도의무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주장 속에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통지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경우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 722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대상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대상회사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금 6,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 등을 통지하는 내용의 2020. 4. 16.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이 사건 2020. 5. 6.자 준비서면이 2020. 5. 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는 양도인으로서의 이행제공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2020. 5. 6.까지의 부분에 한해서만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매매대금 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제공 다음날인 2020.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훈

판사이준현

판사백상빈